

예산총칙

제1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819,063,114	775,533,532	43,529,582
일반회계	744,457,463	702,398,134	42,059,329
특별회계	74,605,651	73,135,398	1,470,253
기타특별회계	22,118,458	21,913,681	204,777
의료보호비	2,829,169	2,619,639	209,530
수질개선	165,360	172,060	△6,700
주민소득지원	1,757,175	1,757,175	0
기반시설	274,044	271,767	2,2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844,909	1,844,909	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14,654,946	14,655,276	△330
산업단지조성사업	592,855	592,855	0
공기업특별회계	52,487,193	51,221,717	1,265,476
상수도사업	19,455,559	18,370,026	1,085,533
하수도사업	33,031,634	32,851,691	179,943

제2조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예산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92,443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